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9. 10 선고 2024가단113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8. 5. 23.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D에게 상환기일을 2018. 11. 9.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15.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D이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7. 6.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8. 7. 10. 'D은 원고에게 32,198,66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8.6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812,103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차648호). 지급명령은 2018.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은 2018. 5. 13. 피고(D의 자녀이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1028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D의 자녀로서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8. 5. 13. 체결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4. 3. 1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참조).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확정) 참조].

원고는 2021. 4.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단137).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가처분으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별지